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 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정일윤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임실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또는 을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또는 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책무,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신고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피해신고 절차 및 보호,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안제8조)
- 보복행위, 허위신고 등 조치 및 징계 규정 (안 제9조 ~ 안제11조)
- 실태조사 및 직장교육 의무화에 대한 규정 (안 제12조 ~ 안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4년 10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조례안: 붙임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또는 을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또는 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기간제근로자,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말한다.
3. “을질 행위”란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러한 요구 등에 상대방의 행위를 갑질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갑질·을질 행위자”란 갑질 또는 을질(이하 “갑질·을질”이라 한다)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갑질·을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신고자”란 갑질·을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의 갑질·을

질 행위 예방 및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갑질·을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을질 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을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을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세부 추진내용
3. 갑질·을질 피해 신고 처리 절차
4. 갑질·을질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대책
5. 그 밖에 갑질·을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갑질·을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감사부서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갑질·을질 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등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제6조(갑질·을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① 누구나 군수에게 갑질·을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사진 등 갑질·을질 행위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별지 서식의 갑질·을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갑질·을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을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가 가해자와 격리 등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군수가 격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보·휴가·재택근무·근무지변경·분리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갑질·을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군수는 갑질·을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2. 갑질·을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 법률 지원
4. 그 밖에 갑질·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① 신고자는 갑질·을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의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등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하거나 갑질·을질피해 신고 처리 중 확보한 증거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복행위 및 신고자 보호 위반시 조치)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허위 신고 및 허위사실 유포)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갑질·을질 행위에 대해 유언비어나 악의적 소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해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거나 관련자 등에게 2차 피해 발생을 야기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및 인사상 처분 등) ① 군수는 갑질·을질 행위자, 갑질·을질 행위를 은폐한 관리자·상급자, 피해자 보호·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사람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갑질·을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군수는 갑질·을질 행위자에게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실시) 군수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을질 행위 피해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갑질·을질 인식 조사 등을 통해 갑질·을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직장교육 의무화) 군수는 갑질·을질 행위 근절을 위해 연 1회 이상 갑질·을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군수는 갑질·을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신고하고자 하는 행위에 체크

(갑질·을질) 행위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연 락 처 (전 화)	
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담당업무	
신고의 취지와 이유				
행위 내용				
비 고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				
※ 작성방법: 1. 갑질·을질 행위의 내용을 해당란에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 사진 등 갑질·을질 행위의 증거자료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임실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